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. 3. 28. 2008고단23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서봉하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금 600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